

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고시

「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」 제8조(거치 제한구역의 지정)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26일

파 주



1. 고시목적

- 거치 제한구역 지정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질서 확립 및 보행자 안전 확보

2. 제한구역: 운정중앙역 일대

[위 치 도]



3. 적용대상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

4.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

- 거치 제한구역에 주차 시 「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」 제13조 (무단방치 금지 등)에 따라 견인·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